

1. 개정이유

‘보훈특별고용 통지서’의 과태료 금액을 정정하고, ‘퇴직(해임·해고)자 통보서’ 중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는 등 취업지원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서식 개정(별지 제15호서식)

-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류 정정

나. ‘퇴직(해임·해고)자 통보서’ 서식 정비(별지 제21호서식)

- 신원이상 삭제, 건강이상·상이처재발을 건강이상으로 통합하는 등 퇴직(해임·해고)자 통보서 서식 정비

다. 기타 서식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 개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란 제2호 중 “50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“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제1호”를 “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3항제1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1호서식의 퇴직 사유 또는 해임·해고 사유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.

퇴직 사유 또는 해임·해고 사유							
제적·사망	[]	휴업·폐업	[]	전직	[]	근무조건 불만	[]
건강이상	[]	인수·합병	[]	자영	[]	무단결근	[]
정년퇴직	[]	고용조정(정리해고)	[]	퇴직금수령	[]	근무태만(불성실)	[]
의원면직	[]	임금체불(3개월 이상)	[]	능력개발·교육	[]	부정행위	[]
명예퇴직	[]	용역전환	[]	저임금	[]	범죄행위	[]
기간만료	[]	거주이전	[]	능력부족	[]	그 밖의 사유	[]
가구원간병	[]	회사이전	[]	적성부적합	[]		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